

## 법무매거진

또 다시 던져진 질문...  
군사법원 왜 있어야 하는가?



-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이 있어야 하는가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끄집어냈다. 군사법원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민주화 이후 줄곧 있어 왔지만 군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군사재판을 둘러싼 논란과 병영 내 인권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사법원 설치의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110조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 27조는 일반 국민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며 군사법원의 존재를 인정한다. 군사법원은 미 군정 시절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군법회의가 역사적 뿌리이다. 6·25 전쟁을 거치며 권한이 커졌고, 1954년 2차 개헌 때 헌법에 군법회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군법회의는 1962년 관련 법

를 개정을 통해 특별법원의 지위를 얻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도 군법회의를 통해서였다. ‘군사법원’이란 이름은 1987년 9차 개헌 때 만들어졌다.

군사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근거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국내 안보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집단적 병영생활 및 생활공간적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재판받는 군인들에게도 비용과 인력이 소모된다.”며 현역병을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게 하는 현행 군형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군사법원 존치론 중에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경우 전시 군사법원의 업무 미숙으로 전시에 군사법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평시 군사법원 폐지론자들은 군인 역시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군사법원은 미 군정 시절부터 군이 사회를 통치하던 시대의 유산이며 여전히 군이 법 질서의 성역에 있게 되는 효과로 남아 있다.”며 “현행 법상 군 지휘관은 군내 행정권 외 군 경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군사법원 관할관 지위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시민사회의 감시체제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용근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은 전문성이 강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전문성이 의도대로 달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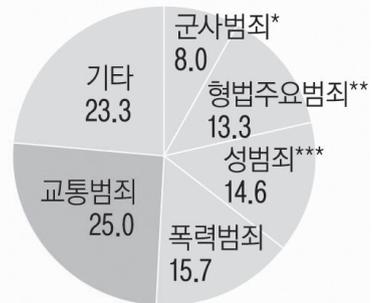
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성과 민주성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사건 수는 총 2839건으로 지방법원 지원

### 군사법원 사건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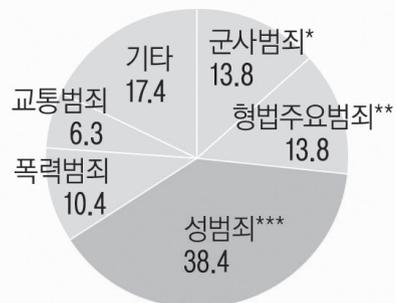
단위: %, 2019년  
출처: <군사법원 연감> 임태훈 등 재구성

#### 보통군사법원(1심)



사건 수: 2839건

#### 고등군사법원(2심)



사건 수: 443건

\* 군사기밀누설, 군무이탈, 군용물 관련 죄, 상관 관련 죄 등  
\*\* 살인, 과실치사, 횡령, 배임, 풍속 등 형법군형법 포함  
\*\*\* 형법, 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 포함

에 접수되는 규모와 비슷했다. 이 가운데 군 기밀 누설, 군무이탈, 군용품 관련 죄 등 군사범죄는 전체의 8.0%(22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2%는 군인이 저지른 일반 형사범죄이다. 항소심 격인 고등군사법원의 경우에도 전체(443건)의 13.8%(61건)만 군사범죄였다. 1심에서 14.5%였던 성범죄 비율이 2심에서는 38.4%로 증가한다. 대법원의 파기율은 2.5%로 일반법원(1.2%)의 2배를 웃돈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사법원의 핵심적 문제는 법원이 행정부 아래에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와 재판이 지휘관의 선의에 의해 결정된다. 군 내부의 비밀 보호를 위해 덮기로 결정하고 짜맞춘다면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러한 군 사법체계로 인해 군이 사회로부터 차단된 성역이 되고 인권유린 행위를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국가는 소수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이스라엘·호주 등은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프랑스·일본·대만·터키 등은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다.

독일·네덜란드 등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해 운영한다. 군사범죄가 아닌 군인들의 성범죄 등 일반 형사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다. 한국처럼 군사법원이 있는 미국과 영국도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한다. 또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달리 승진 시스템을 갖춘 군 검찰조직을 두지 않는다.

2018년까지는 징병제를 운영하는 등 한국과 안보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만은 군사법원을 2013년 폐지했다. 홍중추 하사(당시 상병)가 영내 가혹행위 끝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14년 육군보병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등이 터지면서 19대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특위를 운영하고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했지만 입법을 하지는 못했다. 국방부가 참여하는 민관군병영문화개선협의체 중심으로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단급 부대에 설치하는 군사법원을 군단급으로 올리고, 군 지휘관이 관할관으로서 재판에 개입하는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부분적 개혁이 이뤄졌다.

(출처/경향신문)